

징계 집행 우선 사항 고지

배경

2020년 3월 4일, 개인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대응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해당 시각 이후, 주 공중 보건 담당관은 코로나 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특정 부문 폐쇄를 요구하는 주 전역 공무원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7월 13일 발효된 가장 최근의 주 전역 공중 보건 담당관 행정명령은 주 모니터링 목록에 있는 카운티에 대해 이·미용을 포함한 추가적인 부문의 실내 영업을 폐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 명령은 특정 환경의 코로나 19의 전파 위험이 낮은 실외에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및 노사관계부(캘리포니아주/산업안전보건청)는 COVID-19 Industry Guidance: Hair Salons and Barbershops Outdoor Services 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미용실과 이발소의 직원 및 고객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실외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또한 에스테틱, 피부 관리, 미용 서비스 및 네일 서비스에 대해 유사한 지침을 마련한 COVID-19 Industry Guidance: Expanded Personal Care Services Outdoor Services 를 발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7월 20일 소비자보호국 국장은 실외에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이·미용 서비스, 시설의 야외 공간 사용에 적용되는 보건 및 안전 표준, 실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7월 13일 행정명령에 따른 징계 집행 우선 사항

코로나 19의 전파를 줄이기 위한 실내 영업 제한 지침을 준수할 목적으로, 이미용위원회는 면허증 소지자가 모니터링 목록에 포함된 카운티의 허가 구역에서 실내 영업을 중단하게 하는 집행 방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 우선 사항 및 금일 발표된 면허증 소지자가 실외에서 안전하게 영업하는 방법에 따라 면허증 소지자가 실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보호국 국장이 발표한 지침과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및 노사관계부(캘리포니아주/산업안전보건청)이 발행한 지침에 따라 승인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지침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거나 과태료 및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회는 면허증 소지자가 위에서 언급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 징계 절차를 개시하거나 과태료 부과 및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집행 우선 사항은 즉시 발효됩니다. 이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면허증 소지자는 지역제, 허가 규정, 지역 공중 보건 명령과 같은 기타 요건이 실외 영업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본 고지는 위원회의 징계 및 집행 권한에만 해당합니다.